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24., 이학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6.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7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 (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6. 4. 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2차 정무위원회 (2026. 4.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학영의원)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 기 도)

□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병원¹⁾과 위탁병원²⁾의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족은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 1인(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³⁾(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경우)로서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개정안은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을 65세 이상부터 편입함으로써

1)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2) [참고 2] 위탁병원 현황(9p) 참조.

3) 재해부상군경의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받는 배우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유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독립유공자 등의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수긍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 심사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과 같이 독립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 대한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연령을 하향(75세→65세)하여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현재 7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감면진료 연령 하향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⁴⁾

○ 둘째,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감면진료 연령 하향까지 감안할 경우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인원은 2025년에 약 3만 7,000여명⁵⁾이 증가하고, 소요예산도 79억원이 소요되는 등 향후 5년간 438억 6,9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하여 재원조달방안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진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2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6조의3제1항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5) < 65세이상 연령 하향 시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인원 증가 추계 >

(단위 : 명)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독립유공자 유족	1,369	1,380	1,392	1,403	1,415
보훈보상자 유족	38	44	50	57	65
국가유공자 유족	35,679	36,154	36,635	37,122	37,616
참전유공자	-	-	-	-	-
무공수훈자	-	-	-	-	-
재일학도의용군	-	-	-	-	-
소계	37,087	37,578	38,077	38,582	39,096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위탁병원 진료와 관련한 재원의 배분에 있어, 감면진료 대상 연령 인하 이외에도 위탁병원 지정 확대,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 감면 지원비율의 상향조정 등 다양한 수요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정된 재원의 분배와 국가의 추가적 재정부담능력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연령 인하 문제는 연령 인하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위탁병원 진료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요구와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민국의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